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3 | 2025.10.20. (2025.10.13.~2025.10.1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우회덤핑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덤프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기업 합병 시의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
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
인)**」,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
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 등
11인)**」,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의 「**지방세법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민간 기업
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
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직전 3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른 사업으로 이직한 단기 근로자·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
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을 직전연도
대비 40%까지 증액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
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
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조성·육성하고,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를 구축하여 운항·기체·엔진·부품 등 전 영역에 걸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해외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업무 계약을 국내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등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5년도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10/20(월) 13개 위원회, 10/21(화) 10개 위원회, 10/22(수) 5개 위원회, 10/23(목) 11개 위원회, 10/24(금) 13개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국토교통부) 7
- 「산업 전반의 성공적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산업통상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특이 법안 없음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10
-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국무총리비서실) 1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의원 등 14인) 1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13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 14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1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1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1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 등 11인) 16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1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1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1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19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1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2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4
•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25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6
•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6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공정거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지적재산권] Long-Arm Jurisdiction에 관한 CJEU 판결 및 UPC 사건에 대한 적용 사례
- [소비재·유통업] 소비자 · 유통업 뉴스레터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0. 1. - 2025. 10. 1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 (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2025-10-15
-------	--	------------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
-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
-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②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 대폭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

③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④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
-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와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 집중 점검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
-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

산업통상부

「산업 전반의 성공적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 산업부·과기부·중기부, 제조·산업 AI 대전환 협력 본격화
- AI 핵심기술-인프라 기반의 제조·산업 AX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

2025-10-15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힘

*AX : 'AI 전환(AI Transformation)'의 약자로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음. 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까지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공감대 아래,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힘

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❶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❷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❸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❹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임. 이 외에도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됨.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특이 법안 없음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10.17. ~2025.11.26.

현행 우회덤핑 제도는 우회덤핑 행위로 “경미한 변경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음

우회덤핑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및 덤핑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tel:044-215-446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0.14. ~2025.10.27.
-------	------------------------------	-----------------------------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허가 신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코자 하는 것임 (안 별표1)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신고 내용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 조사시에 개별적으로 증명자료를 징구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처분이 어려운 형편임. 이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토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별표1)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7, 팩스: 044-201-5534\)](tel:044-201-340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0.14. ~2025.11.24.
---------	-----------------------------	-----------------------------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농식품이용권 지급근거, 자료제공 요청 및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행정처분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전화: 044-201-2274, 팩스: 044-868-0461\)](tel:044-201-2274)

국무총리비서실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2025.10.15.
~2025.11.5.

사회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위원회 설치 (안 제2조)

-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대개혁 관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② 위원회 기능 (안 제3조)

-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의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함

③ 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 제7~9조)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격월(원칙)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문의처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전화: 044-200-2835, 팩스: 044-200-2839\)](tel:044-200-283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2025-10-14 발의

각종 통신·금융 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에 따라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바, 신변종 수법의 사기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및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통신·금융수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와 결합한 사기 또는 사이버사기와 같이 다중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 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양산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사회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고, 사기이용 계좌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일부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주관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사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과 함께 가중처벌 등의 벌칙의 특례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5-10-15 발의

현행법은 주주평등원칙의 침해우려 등 자기주식 취득이 가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 없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 합병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행동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특히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등에까지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모회사가 부실을 초래할 정도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단 이를 자회사화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모회사를 합병하게 하여 그 채무까지 떠안게 하는 결과에 이르러, 우량한 자회사까지도 동반 부실화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면서 합병을 진행하여 동반 부실화를 초

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합병 시의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41조의2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10-15 발의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정무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호 의원 등 10인)

2025-10-13 발의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처리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신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개인의 권리행사 방법, 안전조치 등 개별법령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영상정보주체 권리 보호체계와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 규율체계 확립을 통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2025-10-14 발의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 상장하지 아니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여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7조제1항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2025-10-14 발의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펀드설정, 판매, 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모펀드의 특유한 운용방식으로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이 쉽게 유출되고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차입비용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경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5-10-13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종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5-10-13 발의

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025-10-13 발의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3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등 12인)

2025-10-14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39조제3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 등 11인)

2025-10-15 발의

현행법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을 영상콘텐츠로 지정하고 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에서 비중이 큰 게임 및 음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k-pop으로 대변되는 국내 음악은 전세계적 팬덤층을 형성하며 미국 시장에서 k-pop을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며, 게임은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50%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2025-10-17 발의

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의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경제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과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주개발물량 육성 정책으로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93조제19호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5-10-13 발의

현행법은 주택의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취득당시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종과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어 최근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교란 및 주택 가격 왜곡 등이 문제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의 2배로 증가**하고자 함 (안 제11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제3호)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2025-10-15 발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그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시행자가 사업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용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고, 이로 인해 형식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산업단지의 경우 100분의 35 경감)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감면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신탁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세와 균형을 맞추고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등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점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25년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투자와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5조 신설 및 부칙 제2조)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0-17 제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종과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종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0-17 제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0-17 제출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2025-10-15 발의

인공지능산업은 국가 안보 및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각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서비스 대부분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정보기기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기회가 더욱 제한적인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개발이 시급함

한편, 민간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연구개발 자금 부족, 인프라 접근의 어려움, 양질의 데이터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주도의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025-10-13 발의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2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2025-10-14 발의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 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2025-10-13 발의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안 제47조제1항제4호)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0-13 발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한시적·시간제·비전형(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 등)근로자] 비율은 2024년 38.2%로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였음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근로자의 1년미만 근속비율은 15.1%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1년미만 근속비율은 51.6%에 달했음. 또한 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03개월(8년 7개월)인 반면,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34개월(2년 10개월)에 불과했음

이에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3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른 사업으로 이직한 단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2025년 현재 0.9%)을 직전연도 대비 4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2025년 현재 기준 최대 1.26%) 하려는 것임 (이른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0-13 발의

현재 정부는 고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0-13 발의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0-14 발의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지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0-14 발의

퇴직금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장기간 근무한 공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조건 및 지급률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불임금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고 실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8.6.25. 선고 96헌바27,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등),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그럼에도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근로자의 후불임금인 퇴직급여 체불액이 그 중 8,229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등 10인)

2025-10-15 발의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장기근속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거나,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특별 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고용세습이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능력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며 나아가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0-15 발의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시간 등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실효적으로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3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2025-10-15 발의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한파·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 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안 제22조의3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5-10-16 발의

정부는 지난 2005년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과 가입자의 낮은 투자 이해도 등을 이유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 자산 증식과 연금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출범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7%대 수익률을 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기금제도 설정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혜택은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4호, 제4장의2 등)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2025-10-14 발의

대한민국은 최첨단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으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되는 등 우주·항공·방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반면 국내 항공정비업은 그동안 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되어 대한민국이 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가진 세계적 위상에 비해 성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 세계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시장은 2024년 약 95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4%대 성장을 지속해 2030년대에는 약 1,400억 달러(1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반면 전체 시장의 2%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을 해외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23년 약 2조 원에 이르고 해외 정비 비중이 59%에 달함.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여 해외 정비 비중은 71.1%에 달하고 있음. 군용기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해외 업체에 지출한 비용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총 정비비의 44.4%를 차지했고, 향후 공군의 해외 정비 비중은 2028년부터는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내 항공 MRO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며, 사천·인천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사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항공 MRO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동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특히,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조성·육성하고,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를 구축하여 운항·기체·엔진·부품 등 전 영역에 걸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해외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업무**

계약을 국내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항공 MRO 사업을 발전시켜 외화 유출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K-에어로·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약시키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5-10-14 발의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복합자재·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유통·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52조의7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5-10-14 발의

최근 극한호우와 폭염 등 유례없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과거 압축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시설물은 재난·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기후변화와 노후화에 특히 취약한 시설물을 선별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사업의 허가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가 궤도사업을 영구적·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궤도 및 궤도가 건설되는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각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권한 간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는 산림·공원 등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의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궤도사업이 시행되는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사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 시간
10. 20.(월) 13개 위원회	법사위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 17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회 10:00
	기재위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10:00
	교육위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국회 10:00
	과방위	[현장시찰] [업무현황보고] (주)문화방송	상암MBC 10:00
		방송통신위원회 -YTN, TBS, 연합뉴스TV	국회 오후
	외통위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 10:00
		<미주반> 주페루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페루대사관 10:00
		<구주반>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주제네바유엔및 국제기구대표부 10:00
	국방위	병무청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회 10:00
	행안위	<지방1반> 인천광역시	인천시청 10:00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 10:00
		세종경찰청	세종시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농해수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7개 기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관	정선 10:00
	기후노동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31개 기관	국회 10:00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 시 간
	국토위	<지방1반> 경기도	경기도청 10:00
		<지방2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0:00
10. 21.(화) 10개 위원회	법사위	대전고법, 대구고법 등 20개 기관	국회 10:00
		대전고검, 대구고검 등 13개 기관	국회 14:00
	정무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00
	기재위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	국회 10:00
	과방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6개 기관	국회 10:00
	국방위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10:00
		[현장시찰] 전략사령부	전략사령부 15:00
	행안위	경기도청	경기도청 10:00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도청감사 종료 후
	산자위	[현장시찰]	삼척·태백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등 14개 기관	국회 10:00
	기후노동위	[현장시찰] 현대중공업	울산 오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	근로복지공단 14:00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8개 기관	한국철도공사 10:00
		[현장시찰]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14:00
10. 22.(수) 5개 위원회	교육위	<감사1반>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6개 기관	전북대학교 10:00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전북대학교 14:00
		<감사2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6개 기관	대구교육청 10:00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대구교육청 14:00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 시 간
	외통위	<아주반>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10:00
		<미주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관 10:00
		<구주반> 주모로코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10:00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20개 기관	국회 10:00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7개 기관	해양경찰청 10:00
		[현장시찰] 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 16:00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7개 기관	국회 10:00
10. 23.(목) 11개 위원회	법사위	서울고검, 수원고검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부산국제금융센터 14:00
	기재위	<제1반>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등 7개 기관	부산지방국세청 14:30
		<제2반>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등 6개 기관	대전지방국세청 14:30
	교육위	<감사1반>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학교 10:00
		충북교육청,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대학교 14:00
		<감사2반>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5개 기관	경남교육청 10:00
		경남교육청, 울산교육청, 부산교육청	경남교육청 14:00
	과방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10:00
	국방위	공군본부 등 5개 기관	계룡대 10:00
		해군본부 등 7개 기관	계룡대 15:00
	행안위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10:00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 시 간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국회 10:00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기후노동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21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기관	국회 10:00
10. 24.(금) 13개 위원회	법사위	법제처	국회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14:00
	정무위	[현장시찰]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14:00
	기재위	[현장시찰]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포항경주공항 10:30
	교육위	[현장시찰]	제주
	과방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3개 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0
	외통위	<미주반> 주밴쿠버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주밴쿠버총영사관 10:00
		<구주반>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주레바논대사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10:00
	국방위	육군본부 등 11개 기관	계룡대 10:00
	행안위	<지방1반> 대전광역시	대전시청 10:00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청 10:00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문체위	[현장시찰] 연합뉴스 (업무보고 비공개)	연합뉴스사옥 14:00
	농해수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제주 등 4개 기관	국회 10:00
	산자위	<종합감사> 산업통상부 등	국회 10:00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10:00
	기후노동위	[현장시찰]	충남 태안 및 전북 고창 미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20(월) 14:00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 심포지엄	서왕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21(화) 14:00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임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0/22(수) 10:00	(발주처와 함께하는 변혁)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22(수) 14:00	AI의 등장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최민희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0/23(목) 13:30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 한 중 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	이학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강당
자료집 등	10/20(월)	「팩트북」 제119호(2025-5호) 발간	국회도서관	
	10/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2호(2025-19호) 발간		
	10/22(수)	「금주의 서평」 제750호(2025-41호) 발간		
	10/23(목)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호(2025-20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29(월)	「Data+」 제19호(2025-19호)	국회도서관	
	9/30(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8호(2025-18호)		
	10/1(수)	「금주의 서평」 제748호(2025-39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2(목)	공정거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0/16(목)	지적재산권	Long-Arm Jurisdiction에 관한 CJEU 판결 및 UPC 사건에 대한 적용 사례
10/17(금)	소비재·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10/17(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0. 1. - 2025. 10. 14.)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